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620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620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35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수우미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6. 1. 28.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35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